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검사시기에 관한 고찰*

하강현**

-
- I. 서 언
 - II. 물품의 검사시한
 - III. 물품검사의 연기
 - IV. 물품검사관련 기타문제
 - V. 결 언
-

주제어 : 물품의 검사시한, 적시검사, 물품검사의 연기, 구제권상실

I. 서 언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한 경우에, 그 불일치에 의존하는 자신의 구제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물품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간접의무의 성격을 지닌다. 만일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없으면,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대부분의 매수인은 물품의 검사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그 검사시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자신의 구제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관련 사례를 연구해 보면, 의외로 물품검사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많

* 이 연구는 2017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E-Mail : khha@ysu.ac.kr

2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물품검사에 대한 시간적 한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법¹⁾에서는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그 사정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도록 규정(제38조 1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이 어떠한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국제물품매매에서의 거래는 매 거래마다 그 사정이 다르고, 품목과 업종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매수인은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검사를 하여야만 ‘적시(適時)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물품검사에서 불일치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자신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매수인은 물품검사 시한 및 불일치통지 시한을 준수하여야만,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물품의 검사시한은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제38조 2항) 또는 운송중 목적지의 변경이나 전송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제38조 3항)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로 연기된다. 물품의 검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수완²⁾, 정홍식³⁾, 김준태⁴⁾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를 법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며, 오원석⁵⁾, 허광욱⁶⁾은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상무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물품의 검사에 관한 시한적인 문제 및 관련된 문제를 국제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여,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매수인이 물품의 검사시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 또는 ‘국제물품매매법’이라 약칭한다. 본고에서 법령 표기 없이 조항만 표기된 것은 전부 CISG(국제물품매매법)를 의미한다.
- 2) 양수완, “CISG상 매수인의 물품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쟁점 검토 : 우리나라 법과의 비교고찰을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19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0. 12, pp. 77~104.
- 3)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국제거래법연구 제20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7, pp. 29-60.
- 4) 김준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검토 및 국내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6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pp. 61~75.
- 5)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pp. 63~82.
- 6) 허광욱,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내용의 상세정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pp. 27~55.

II. 물품의 검사시한

1. 규정내용

1) 의의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는 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도인에게 구제권리를 발생시키는 여타의 의무와는 달리⁷⁾, 자신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간접적 의무의 성격을 지니며 일면, 권리의 성격도 지닌다. 물품검사의무의 이행에는 검사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검사시기의 제한 즉 검사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법에서는 제38조 제1항에서 「매수인은 제 사정내에서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검사의 시한은 “제 사정내에서(in the circumstances)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로 한정된다. 이러한 시한내에 이루어진 검사는 ‘적시검사’(timely inspection)라고 할 수 있다.⁹⁾ 하지만 국제물품거래의 품목은 다양하며,

-
- 7) 매수인의 의무위반 유형에 관하여는 하강헌,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5, pp. 87~111,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8, pp. 95~124 참조.
- 8)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매수인은 물품수령 후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면에 각국의 국내법은 대체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UCC) 제2-513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은 합리적인 장소 및 시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제 또는 수령 전에 물품을 검사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Sale of Goods Act(SGA 1979) 제34조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또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상당한 기회를 갖기까지는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매매와 국내매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상법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물품매매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한편 한국민법에서는 물품검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하자발견시 6개월(또는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으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82조 제574조).
- 9) “실행가능한(practicable)”의 기준은 그 물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물품이 꽃이라면, 그 검사는 인도당일에도 실행가능한 것이다. Gillette C. P. and Walt S. D.,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Theory and Practice*, 2th Edition, Cambridge

4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거래여건은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등 거래의 사정은 각각의 거래마다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에 국제물품매매법에서는 ‘제 사정내에서’라는 전제를 두고, 검사는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로 그 시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한은 매우 주관적이며 관념적인 기준이므로, 당사자인 각 거래에서의 매수인은 그 시한의 해석을 두고 매우 당혹해 할 수 밖에 없다. 대체로 이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은, 검사 후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시한인 ‘합리적인 기간내(within a reasonable time)’ 보다도 더 빠른 신속성을 요구한다고 본다.¹⁰⁾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하여 자신의 구제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 검사→합리적인 기간내 불일치 통지”라는 두 가지 선행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물품의 검사범위는 동 물품검사시 매수인이 ‘발견하였어야 하는 모든 물품의 불일치’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만’ 또는 그 ‘물품을 사용’해 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불일치는 잠재적인 불일치(하자)로 간주되어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본 물품검사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¹¹⁾ 물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자신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구제권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물품검사를 이행하였으나 물품검사 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구제권을 상실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사시한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 시간적 간극을 일정부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2) 검사시한 설정시 고려사항

검사시한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University Press, 2016, p. 165.

10) Kröll S., Mistelis L. and Viscasillas P. 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p. 577. 그렇다고 하여, ‘즉각(prompt)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부패성물품’이라면 특별히 신속하게 검사되어야 할 것이다. 빠르면 ‘몇 시간내’에서부터 늦어도 ‘며칠이내’에는 검사되어야 한다. 다른 경우에 있어, 당해 물품이 다른 물품과 결합(combined)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그 ‘결합 전에 반드시 검사’되어야만 한다. Schweng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644~645.

11) Honnold J. O., (Edited and Un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4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p. 362; Ferrari F., Flechtner H. and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I.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p. 390.

(1) 검사의 복잡성 및 물품의 성질

스페인법원은 스페인의 매수인과 미국의 매도인간의 냉동식용계 매매에서의 판시를 통하여, “물품검사와 관련, 검사기간은 물품의 검사가 간단한 것인지 또는 복잡한 것인지 그리고 거래 물품의 성질이 ‘부패성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밝히면서, 육안 또는 냄새 등으로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한은 매우 짧아진다”라고 밝힌 바 있다.¹²⁾

(2) 검사의 전문성 및 업계의 관행고려

독일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물품에 대한 ‘방사선 노출검사’와 같은 전문적인 검사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면서, “물품검사의 시한 및 검사의 범위는 ‘당해 비즈니스 업계의 관행’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¹³⁾

(3) 기업의 규모

오스트리아법원의 하이킹신발매매 판결에서는, 물품검사의 시한을 결정하는 데에는 “매수인 기업의 규모, 물품의 종류 및 ‘그 물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밝혀, 그 고려사항으로 ‘기업의 규모’와 같은 매수인 기업의 능력을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¹⁴⁾

(4) 포장유형 및 물품의 종류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검사시한의 산정에는 ‘물품의 종류, 포장의 유형, 테스트 가능성 등을 고려, 검사의 강도와 범위를 결정해야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¹⁵⁾

(5) 각 할부분마다 검사시한 별도 적용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는 독일의 매수인과 중국의 매도인간의 의류매매에서, 1,2차분 물품이 불일치하여 매수인이 스스로 하자보완을 한 후, 3차분에

12) 즉 ① 검사의 복잡성 ② 물품의 부패성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CLOUT Case 849 : Spain : Pontevedra Provincial High Court, First Section : Judgement of the Cambados Court of First Instance No. 1, 7 May 2007 19 December 2007 : A/CN.9/SER.C/ABSTRACTS/83.
 13) 당해 물품의 검사는 어느 정도 즉 검사의 깊이와 범위는 당해 업계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범위에 따라, 자연히 검사의 시한도 달라진다. Flechtner H. M., Brand R. A. and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453-454, CLOUT Case 84 : Germany : Bundesgerichtshof VIII ZR 321/03, 30 June 2004 : A/CN.9/SER.C/ABSTRACTS/74.
 14) CLOUT Case 423 : Austria : Oberster Gerichtshof, 10 Ob 223/99, 27 August 1999 : A/CN.9/SER.C/ABSTRACTS/37.
 15) CLOUT Case 23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arlsruhe; 1 U 280/96, 25 June 1997 : A/CN.9/SER.C/ABSTRACTS/17.

6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대하여는 물품검사도 없이 수령거절한 매수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할부인도분은 각 할부분마다 물품검사 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라고 밝혔다.¹⁶⁾

이와 같이, 물품검사의 시한을 설정하는 데에는 물품의 성질과 종류, 검사의 복잡성과 전문성, 업계의 관행, 포장의 유형 및 매수인 기업의 능력 등 다양한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각 할부분마다 검사시한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관련된 사례

검사시한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규정내용과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그 시간적 개념은 모호하다. 여기에서는 품종(업종)별로 실제 시한을 밝히면서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꽃과 어류

꽃 매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국제 꽃 매매(매수인 독일, 매도인 이태리)에서의 물품검사는 인수받는 ‘그날에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¹⁷⁾

냉동어류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한 법원에서는 요르단의 매수인이 스페인의 매도인으로부터 CIF조건으로 냉동어류를 수입한 사건에서, ‘냉동어류의 기생충감염 조사’를 위한 ‘1개월’의 검사시한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¹⁸⁾ 기생충감염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 것이다.

활어매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독일의 매수인이 체코의 매도인으로부터 활어를 수입한 사건에서, 독일의 매수인이 ‘물고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

16) CLOUT Case 1,168 : People's Republic of China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31 January 2000 : A/CN.9/SER.C/ABSTRACTS/120. 같은 취지로 할부인도분의 경우, 최종인도분 수령 후 물품검사시한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인도분부터 각 할부분을 매수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검사시한이 산정되는 것임을 중국 중재법정과 네덜란드법원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 CLOUT Case 988 : China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CISG/2000/17 : A/CN.9/SER.C/ABSTRACTS/99, CLOUT Case 944 : The Netherlands : Court of Appeals of 's-Hertogenbosch No. C0400803/He, 11 October 2005 : A/CN.9/SER.C/ABSTRACTS/145.

17) CLOUT Case 29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Saarbrücken ; 1 U 703/97-143, 3 June 1998 : A/CN.9/SER.C/ABSTRACTS/26.

18) CLOUT Case 484 : Spain : Provincial Court of Pontevedra (Sixth Division), 3 October 2002 : 3036/2002 : A/CN.9/SER.C/ABSTRACTS/42.

고 ‘4주후’에 매도인에게 통지’한 사건에서 “물고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 및 통지는 ‘8일’이내에 이행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밝히면서, 독일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경우에서의 검사가 지연되면 ‘물품수령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¹⁹⁾

2) 책과 신발

책 제작인도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을 참조할 수 있다. 매수인은 책을 제작할 인쇄용 필름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책을 제작하여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모두 4회에 걸쳐 수령하였고, 매수인은 최종분 수령 후 33일만에 불일치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본 사건에서 중재법정은 “매수인은 각 할부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최종분 수령 후 물품검사를 하고, ‘33일후’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것은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위반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경우에서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전체검사(랜덤 샘플링이 아닌)라 하더라도, 각각 ‘14일 이내’에 이행되었어야 하였다”라고 밝혔다.²⁰⁾

하이킹신발 매매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한 법원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하이킹신발을 수회에 걸쳐 할부인도 받은 매수인이, 최종분 수령 후 ‘3주 후’에 매도인에게 불일치통지를 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 법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불일치통지를 하는 데까지 ‘14일 이내’에 이행했어야 하였다”라고 밝혔다.²¹⁾

3) 직물류

직물류 매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직물을 수령 받고 ‘7주 후’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한 독일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²²⁾ 독일의 다른 법원에서도 직물을 수령하고 ‘2개월 후’ 불일치통지를 한 독일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동 법원은 판시에서 직물에 대한 검사는 랜덤검사를 실시하면 “‘머칠내’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²³⁾

19) CLOUT Case 28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Jena : 8 U 1667/97(266), 26 May 1998 : A/CN.9/SER.C/ABSTRACTS/26.

20) CLOUT Case 1,086 :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Case No. 9083, August 1999 : A/CN.9/SER.C/ABSTRACTS/110.

21) CLOUT Case 423 : Austria : Oberster Gerichtshof, 10 Ob 223/99, 27, August 1999 : A/CN.9/SER.C/ABSTRACTS/37. 본 판결을 참조해 보면, 신발 등 일반 생활용품은 ‘늦어도 7일 이내’에 검사되어야 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2) CLOUT Case 634 : Germany : Landgericht Berlin 103 O 324/02, 21 March 2003 : A/CN.9/SER.C/ABSTRACTS/57.

23) CLOUT Case 81 : Germany :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 6 U 32/93, 10 February 1994 : A/

8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양모피코트 매매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한 법원에서는 스위스의 매도인으로부터 양모피코트를 수입한 리히텐슈타인의 매수인에게 물품검사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동 물품에 대한 물품의 검사는 ‘7일 이내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그 불일치 통지는 2주 이내에 이행했어야 하였다”라고 밝혔다.²⁴⁾

4) 기계장비류 및 화학제품

다양한 기계장비류의 물품검사시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섬유세척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한 법원에서는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한 스위스의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검사를 ‘7일 이내’에 실시한 것은 검사시한으로 인정 된다”라고 밝힌바 있다.²⁵⁾

둘째, 기계의 매매에서 기계의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기계의 성능을 검사하고 56일 후에 매도인에게 통지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기계의 성능검사(test run)는 ‘2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²⁶⁾

셋째, 필터용 섬유직물매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동 물품에 대한 검사는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²⁷⁾

넷째, 독일의 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기계의 검사시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한 바 있는데, 독일의 종이 제조업자인 매수인은 스위스의 매도인으로부터 축축한 티슈 반제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한 페이퍼 그라인딩 기계를 수입하였지만 그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동 법원은 “동 물품과 같은 기계장비는 내부의 ‘비전문가가 검사하는 데에는 1주일’, 외부의 ‘전문가가 검사하는 데에는 2주간’의 검사시한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²⁸⁾

CN.9/SER.C/ABSTRACTS/6. 직물에 대한 검사는 수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늦어도 ‘1주일 내’에는 검사가 완료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4) CLOUT Case 251 : Switzerland :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 HG930634, 30 November 1998 : A/CN.9/SER.C/ABSTRACTS/25. 직물 및 의류 등에 대한 검사는 늦어도 ‘7일 이내’에 랜덤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불일치통지는 늦어도 ‘14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5) CLOUT Case 884 : Switzerland : Obergericht des Kantons Luzern (Higher Court of the Canton of Lucerne), 11 01 73, 12 May 2003 : A/CN.9/SER.C/ABSTRACTS/87.

26) CLOUT Case 431 : Germany : Oberlandesgericht Oldenburg ; 12 U 40/00, 5 December 2000 : A/CN.9/SER.C/ABSTRACTS/37. 기계의 성능검사는 그 기계의 기능이나 복잡성에 따라 검사시한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주~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27) CLOUT Case 359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oblenz ; 2 U 1556/98, 18 November 1999 : A/CN.9/SER.C/ABSTRACTS/33.

28) CLOUT Case 319 : Germany : Bundesgerichtshof ; VIII ZR 287/98, 3 November 1999 : A/CN.

다섯째, 표면보호필름의 매매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시가 나왔는데,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표면보호필름을 수입하고도 테스트를 해보지 아니한 오스트리아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동 물품에 대한 테스트기간은 ‘3-4일’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²⁹⁾

여섯째, 스위스의 한 법원에서는 의료기자재매매에서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동 기자재를 수입하고도, 물품검사없이 각 병원에 판매한 스위스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동 물품에 대한 물품검사시한은 ‘10일간’이 합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³⁰⁾

일곱째, 독일의 함부르크법원에서는 스페인의 매수인과 네덜란드의 매도인간의 아이스커피제작용 얼음생산장비 거래에서의 판시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검사 및 통지의 기한은 ‘14일에서 1개월까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³¹⁾

한편, 화학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에서는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유리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알루미늄산화물을 수입한 프랑스의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동 물품과 같은 원료를 검사도 하지 않고 혼합한 것은 매수인의 책임이며, 이러한 원료를 검사하는 데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³²⁾

이와 같이 물품의 검사시한은 물품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꽃이나 채소 등은 물품수령시 즉시 검사하도록 요구되며, 부패성물품은 며칠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당해물품의 검사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에 따라서도 그 시한은 확연히 달라진다.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노출검사 등은 1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구성제품, 생활용품, 장비기계류 및 섬유직물 등은 대체로 수

9/SER.C/ABSTRACTS/30. 기계장비에 대한 검사를 내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2주간’의 검사시한이 합당하다고 보는 판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9) CLOUT Case 230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arlsruhe ; 1 U 280/96, 25 June 1997 : A/CN.9/SER.C/ABSTRACTS/20. 동 물품은 물품표면에 부착하여 그 물품을 보호하는 물품이므로, 부착-제거 테스트를 간단히 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검사시한은 ‘3~4일’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30) CLOUT Case 192 : Switzerland : Obergericht des Kantons Luzern ; 11 95 123/357, 8 January 1997. 매수인은 병원측으로부터 동 물품이 인수거절을 당하자, 3개월 후 매도인에게 물품 불일치통지를 하였다.

31) CLOUT Case 1,399 : Germany : 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Hamburg 12 U 39/00, 25 January 2008 : A/CN.9/SER.C/ABSTRACTS/1449.

32) CLOUT Case 284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öln : 18 U 121/97, 21 August 1997 : A/CN.9/SER.C/ABSTRACTS/26. 화학제품에 대한 검사는 직물이나 생활용품과는 달리, 그 검사가 복잡하므로 검사시한은 연장되어야겠지만, 1개월 이라는 시한은 장담할 수 없는 시한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리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라 할지라도, 2주 이내에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령후 1주일내에 검사하도록 요구되고, 물품불일치(부적합)통지는 수령 후 2주 이내에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덧붙여, 내구성물품은 그 물품검사의 전문성 혹은 외부전문가에게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본다.

III. 물품검사의 연기

1. 규정내용

물품검사의 연기와 관련하여, CISG 제38조 제2항에서는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검사시한은 제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행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 내’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아래의 제3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물품검사시기는 매매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위험이전시기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즉 통상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 한다”는 제67조 제1항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본 항과 관련된 분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PSI(Pre-Shipment Inspection)를 실시한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³³⁾

물품검사의 연기와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제3항과 관련된 것이다. 제38조 제3항에서는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轉送)되고, 또한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목적지

33) 독일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터키의 매도인으로부터 신선한 오이를 수입하기 위하여, 오이를 선적전에 검사한 독일의 매수인이 운송(7일) 후 수령시에 ‘물품에 하자가 있다’라며 대금지급을 거절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CLOUT Case 48 : Germany : 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 17 U 82/93, 8 January 1993 : A/CN.9/SER.C/ABSTRACTS/3. 선적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그 물품의 불일치는 운송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운송인(해운회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국내법(UCC 2-316 (3)(b))에서는 계약체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검사에서 매수인이 어떠한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에 대한 묵시적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Schwenzler I., Hachem P. and Kee C.,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98.

가 변경되거나(*redirected*)’ 또는 ‘전송되는(*redispatched*)’ 경우에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 할 때까지 ‘합리적인 검사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만 검사시한은 연기된다고 정하고 있다. 가령, 전매를 목적으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밀봉된 캔이나 상자에 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대량의 물품을 신속히 환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목적지에서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사의 연기는 매도인이 이러한 목적지 변경 또는 전송을 ‘계약 체결시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³⁴⁾ 본항 관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나 전매의 가능성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로 다툼이 생긴 사건이 많다. 또다른 경우로는, 매수인이 중개상 또는 수입판매 유통상인 경우에, 자신이 전매한 고객 즉 새로운 구매자(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한 이후까지 물품의 검사가 연기되는지의 여부로 다툼이 생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 관련된 사례

1) 매도인이 물품의 전송을 알고 있었던 경우³⁵⁾

(1) 사건개요

스페인의 매수인은 2006년 6~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의 고객이 포르투갈을 응원하는데 사용될 포르투갈기를 중국의 매도인에게 특별주문제작(198,000개)을 의뢰하여, 2006년 4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세차례 할부인도 받았다. 이는 매수인이 포르투갈에 있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관측용으로 무상배부 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매수인은 동 물품을 수령한 후 곧바로 포르투갈의 고객에게 발송 배부하였다. 수령시 물품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배부하자마자, 포르투갈의 고객으로부터 ‘국기가 너무 조잡하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매수인은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자마자 즉시 물품을 검사한 후, 6월 23일에 처음으로 물품에 대한 불일치문제를 매도인에게 제기하였다. 이는 첫 수령 후 2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도 없이 포르투갈로 송부하였으므로, 물품검사시한이 경과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34) Schlechtriem P. and Schwenzer L.,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2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56-458.

35) CLOUT Case 1,383 : Spain : Madrid Provincial High Court 14 July 2009 : A/CN.9/SER.C/ABS TRACTS/147.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본 거래에서의 물품은 부패성물품이 아니므로 검사 시기는 그러한 물품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물품은 판촉용 물품으로 신속히 유통되었고, 반환받자마자 즉시 물품검사를 하였으므로 물품검사의 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매도인이 제기한 매수인의 물품수령 후 전송하기 전 물품검사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물품을 포르투갈로 전송하는 것임을 계약체결시 알고 있었으므로,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시한은 새로운 목적지 도착 이후까지로 연기된다”라고 판시하였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동 물품을 매수인이 ‘포르투갈로 전송’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검사시한은 동 물품이 포르투갈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되는 것이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한 판정³⁶⁾에서도 타이완 매도인으로 화학세정장비를 수입한 중국의 매수인이 도착항이 아닌, ‘내륙운송 후 물품을 검사’한 사건에서도 매수인의 ‘물품검사 시한의 연기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동 물품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구에서의 검사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동 물품은 내륙으로 운송된 후 설치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검사시한은 내륙운송이후부터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물품의 전송이나 목적지 변경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지 도착 이후까지 물품의 검사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만 새로운 목적지 도착이후까지 물품의 검사가 연기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전송을 알 수 없었던 경우³⁷⁾

(1) 사건개요

독일의 매수인(피고)은 프랑스의 매도인(원고)으로부터 문(doors)을 수입한 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자신의 독일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였다. 이때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받게 되자, 최종분 수령후 2개월 반이 지

36) CLOUT Case 809 : PR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20 April 1999 : A/CN.9/SER.C/ABSTRACTS/78.

37) CLOUT Case 292 : Germany : Oberlandesgericht Saarbrücken ; 1 U 69/92, 13 January 1993 : A/CN.9/SER.C/ABSTRACTS/27.

난 시기에 품질 불일치를 사유로 매도인에게 대금지급 거절선언을 하였다. 이에 프랑스의 매도인은 독일의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검사시한 및 불일치통지 시한을 경과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매수인은 “자신은 중개상(유통업자)이므로, 물품을 검사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고객에게 운송될 때까지 그 검사시한은 연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제38조 제3항은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검사가 연기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항이 적용되려면 “매수인은 순수 중개상으로서 계약체결시 바로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도록 계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이 동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 한 후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본 항은 순수 중개무역상인 경우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입후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먼저 물품을 검사하여야만 한다. 매수인이 수입유통상인 경우에, 이러한 과실을 자주 범하고 있다. 스위스 법원의 한 판례³⁸⁾에서도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의료기자재를 수입한 후 판매하는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인 병원측에서 물품에 대한 하자를 제기하자, 뒤늦게 물품을 검사하고, 불일치를 통지한 매수인에게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즉 본항은 순수 중개무역을 하는 중개상으로서, 그 물품의 최종수령자를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무조건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될 때까지 연기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본 항은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알고 있어야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순수 중개업자로서 수입하는 매수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상에 동 물품의 실수요자의 명세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약상에 기재한 경우에는, 물품의 검사는 ‘실수요자 수령후로 연기’된다.

38) CLOUT Case 192 : Switzerland : Obergericht des Kantons Luzern ; 11 95 123/357, 8 January 1997 : A/CN.9/SER.C/ABSTRACTS/12.

3)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 변경을 알 수 없었던 경우³⁹⁾

(1) 사건개요

우간다의 매수인은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신발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은 케냐의 몸바사항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물품을 몸바사항(C&F 조건)에서 수령한 매수인은 물품을 몸바사항에서 검사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소가 있는 우간다의 캄팔라로 연결운송을 하였다. 최종분 대금지급후 매도인은 B/L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매수인은 우간다에서 수입통관을 하던 중 우간다 표준품질관리국으로부터 동 신발이 ‘너무 비위생적이다’는 이유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불일치 통지 및 추가기간을 설정 통지한 후에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이에 독일의 매도인은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장소인 몸바사항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검사하였어야하므로, 그 검사시한이 경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간다의 매수인은 “자신의 주 영업소가 있는 캄팔라까지 검사는 연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금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매수인이 물품수령장소인 몸바사항에서 간단한 랜덤 샘플링 검사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물품검사의무의 위반이며, 매수인의 영업소가 우간다의 캄팔라에 있다고 하여, 물품의 운송 목적지가 캄팔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의 주 영업소가 우간다에 있다고 하여, 그 운송 목적지가 우간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품운송의 목적지가 변경되는 것과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덧붙여, 계약체결시 동 물품은 우간다에서 판매될 것임을 매도인에게 알렸다고 하여, 그 검사의 시기가 캄팔라로 반드시 연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물품을 수령한 케냐의 몸바사항에서 ‘검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 항에서 물품수령시 포장 몇 개를 풀고, 중고신발에 대한 랜덤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품운송의 목적지 변경과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와는 아무

39) CLOUT Case 775 : Germany : Landericht Frankfurt am Main 2-26 O 264/04, 11 April 2005 : A/CN.9/SER.C/ABSTRACTS/74.

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매도인이 목적지변경을 알 수 있었다하더라도,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수령시 물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연계(내륙)운송을 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단하게나마,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IV. 물품검사관련 기타문제

1.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물품의 검사시한(제38조) 또는 불일치통지(제39조) 시한을 지키지 못한 매수인은 종종 ‘매도인의 악의(제40조)’를 주장하기도 한다. CISG 제40조에서는 「물품의 불일치가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고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했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제반 사정으로 보아 ‘매도인이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입증없이도 동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⁴⁰⁾ 이러한 매도인의 악의조항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해진다. 다른 문제로는,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한 후 그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물품에 대한 변형을 하거나, 물품검사 없이 물품을 가공 또는 변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자신의 구체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또다른 문제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차례 나누어 할부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종종 최종분 수령일부터 물품검사시한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검사시한은 최종분을 수령한 이후에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할부분 수령시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위와 같은 물품검사와 관련된 문제를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0) 본 조항은 불필요한 매수인에 대한 징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매도인이 ‘알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의 구체권리를 회복시켜준다. 매도인이 그러한 불일치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onnold J. O., *Op. Cit.*, pp. 376~377.

2. 관련된 사례

1) 매도인 악의조항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⁴¹⁾

(1) 사건개요

오스트리아의 매수인은 독일의 매도인으로부터 표면보호필름을 수입하였다.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그 필름을 테스트해보지는 않은 채, 물품에 직접 사용하였다. 필름을 고급 강철제품에 붙였다가 떼어 내었을 때 그 표면에 아교의 찌꺼기가 남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그 다음날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물품을 수령한지 ‘24일’이 지난 때였다. 본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검사시한 및 불일치 통지시한이 경과하여,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동 물품을 인도할 때 계약에 불일치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불일치에 의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은 늦어도 3~4일 내에 검사를 시작하여, ‘7일 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후 늦어도 8일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물품 수령 후 24일이 경과된 후 이행한 통지는 그 시기적 제한을 경과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매수인이 주장한 ‘매도인의 악의’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매수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3) 판결의의

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악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매수인 자신에게 있다. 다수의 사례에서 물품검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수인의 악의’를 주장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인 판례는 흔하지 않다.⁴²⁾ 매도인의 악의가 인정된 보기 드문 판례중 하나로는,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와인을 수입한 독일의 매수인이 주장한 ‘매도인의 악의’가 독일법원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다.⁴³⁾ 이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와인에 물이 9%

41) CLOUT Case 230 : Germany : 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Karlsruhe ; 1 U 280/96, 25 June 1997 : A/CN.9/SER.C/ABSTRACTS/20.

42) ‘매도인의 악의’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지만, 실패한 사례(CLOUT Case 1,086, 1,036, 838, 773 등)를 참조.

43) 매수인의 입증이 없더라도, 와인속에 물이 섞여 있는 것은 매도인이 고의로 하지 않은 이

함유된 사실을 매도인이 모를 수가 없었다”고 보아, ‘매도인의 악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매수인의 입증없이도 ‘매도인의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매도인의 악의는 매수인이 입증해야하지만, 매도인이 알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매수인의 입증없이도 적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매도인의 악의조항이 적용되어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상실된 매수인의 구제권이 회복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며, 그 입증도 쉽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한다.

2) 매수인이 물품을 변형시킨 경우⁴⁴⁾

(1) 사건개요

이태리의 매도인으로부터 대리석판을 수입한 독일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리석판이 파손되어 있고, 서로 엉켜 붙어있다”고 통지한 후, 그 석판을 절단하고 가공하였다. 그 후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정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주장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석판을 가공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 독일법원은 “석판은 매수인이 작위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지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검사의 결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작위로 변형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다.

(3) 판결의의

물품검사의 결과, 물품이 계약에 불일치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동 물품을 가공 또는 변형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의무’를 준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을 작위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물품검사후 동 물품을 가공 또는 변형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한다.

상 발생할 수 없는, 즉 ‘모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앞의 CLOUT Case 170).

44) CLOUT Case 316 : Germany : Oberlandesgericht Koblenz ; 2 U 1899/89, 27 September 1991 : A/CN.9/SER.C/ABSTRACTS/30.

3) 매수인이 각 할부분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⁴⁵⁾

(1) 사건개요

매수인은 자신의 인쇄용 필름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은 슈퍼마켓 할인 서점에서 판매될 책을 인쇄하여, 매수인에게 4회 할부 인도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매수인은 1~3회 할부분을 수령하는 동안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최종 4회분이 도착한 후 33일이 지나서야 수량의 불일치 등을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정결과

본 사건에서 ICC 중재법정은 “매수인의 물품검사시한은 각 할부분의 수령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최종분이 도착한 후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분의 검사 및 통지시한도 ‘14일’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인에게 패소판정을 내렸다.

(3) 판정의의

다수의 사례에서,⁴⁶⁾ 매수인은 할부 수령하는 계약에서, 최종분 수령후에 물품을 검사하는 과실을 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수령분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가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각 할부분 수령시마다 실행가능한 짧은 시한내에 물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할부인도계약은 각 할부분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IV. 결 언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시간적 제한은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그 시한이 한정된다. 이 시한을 준수하면 매수인의 물품검사는 “적시검사”가 된다. 하지만 동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물품검사시한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품검사의 시기적 제한을 설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참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요소로는 당해 물품의 종류와 성질, 물품검사의 복잡성 및 전문성, 매수인 기업의 규모와

45) CLOUT Case 1,086 :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Case No. 9083, August 1999 : A/CN.9/SER.C/ABSTRACTS/110.

46) CLOUT Case 423, 168 등 참조.

능력, 포장의 유형 및 당해 업계의 검사관행 등이 있다. 물품의 종류와 성질은 검사 시한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꽃이나 채소 등은 물품수령시 즉시 검사하도록 요구되며, 부패성물품의 검사시한은 수령 후 며칠 이내로 한정된다고 본다. 반면에 내구성물품은 그 물품검사의 복잡성 및 전문성 또는 매수인기업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그 시한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장의 유형이나 상태 및 검사의 외부 위탁여부 등도 검사시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노출검사 등은 1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내구성제품, 생활용품, 장비기계류 및 섬유제품 등은 대체로 수령 후 1주일내에 검사하도록 요구되고, 물품불일치(부적합) 통지는 수령 후 2주이내에 이행하도록 요구된다고 본다.

물품검사의 연기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물품의 PSI 검사후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도인이 물품의 전송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만 한다.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는 다른 문제로는, 매수인이 수입유통상으로서 자신의 여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물품의 검사가 자신의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이후로 연기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매매계약체결시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계약상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검사는 연기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매수인은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즉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 변경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혹시 알 수 있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간단하게나마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덧붙여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와 물품검사의 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매수인은 유념하여야한다.

물품검사와 관련된 기타 문제로는, 우선 매수인이 매도인 악의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의 구제권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도인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의 입증없이도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매도인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으며 그 입증도 쉽지 아니하다는 점도 유념하여야한다. 또한 매수인은 자신이 수령한 물품을 가공 또는 변형시킨 경우에는,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한다. 물품검사 후 불일치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그 상태로 즉시 매수인에게 물품불일치통지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는, 물품을 할부인도토록 약정한 경우에는 각 할부분마다 매수인의 물품검사시한이 따로 적용되며, 최종분 수령 후부터 물품검사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적시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물품의 불일치에 의

20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존할 자신의 구제권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수인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물품 수령후에는 최대한 짧은 시한내에 물품을 검사한 후, 물품불일치 발견시 그 사실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의존할 자신의 구제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매수인의 물품검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준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검토 및 국내사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제6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 양석완, “CISG상 매수인의 물품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쟁점 검토 : 우리나라 법과의 비교고찰을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 19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0. 12.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 정홍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 국내외 판례와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0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7.
- 하강현, “CISG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 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5.
- _____,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8.
- 허광욱,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내용의 상세정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 Flechtner H. M., Brand R. A. and Walter M. S.,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Ferrari F., Flechtner H. and Brand R. A., *The draft UNCITRAL digest & beyond : cases & unresolved issues in the I.N. Sales Convention*, European law publishers, 2004.
- Gillette C. P. and Walt S. D.,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Theory and Practice*, 2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Honnold J. O., (Edited and Undated v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4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 Kröll S., Mistelis L. and Viscasillas P. 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 Schlechtriem P. and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22 무역상무연구 제74권 (2017. 5)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chwenzer I., Hachem P. and Kee C.,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4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한국민법

한국상법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Sale of Goods Act(SGA)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Uniform Commercial Code(UCC)

ABSTRACT

A Study on the Buyer's Timely Inspection of the Good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ang-Hun HA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38 lays down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requires the buyer to examine quickly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Article 38 (1) provides that the examination be made within as short a period a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goods have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rule is based on the fundamental idea of reasonableness, meaning that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It may be said that the buyer should act reasonably fast.

Article 38 (2), (3) concerns sales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where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consists in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In this case the buyer is generally able to examine the goods only after they have come to destination. Article 38 (3) takes into account the case where the buyer redirects the goods in transit or re-dispatches them to another destination. Redirection in transit occurs when the destination is changed before the goods are received by the buyer. The buyer could re-dispatch the goods without having them unloaded, or re-dispatch them through another carrier.

Keywords :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Timely Inspection, Later Examination, Examination Deferred, Re-direction, Re-dispatch